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봉양순,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이봉준,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자치구와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긴급차량”,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264,021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전역
- 규모 :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 및 화재취약지역
- 사업기간 : 2025.01. ~ 2025.12.
- 사업내용 : 긴급출동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및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등 보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